

의안번호	2211758
의 퇴 인	김소회의원
회 답 일	2025.08.29.
추계번호	25C40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흡연 예방 및 계도를 위한 음성 안내기 및 경고표지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시설 관리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10항) ○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기준, 운영 방식, 기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1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금연을 위한 조치(안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에 음성안내기와 경고 표지(이하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경우 금연 안내 설비 설치 및 유지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할 금연구역의 수, 안내 설비의 종류 등이 정해져야 하나, 개정안은 금연 안내 설비의 설

치 기준, 운영 방식,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 금연구역은 동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외에도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및 조례로 정하는 장소 등 다양한 구역이 포함됨
- 개정안에 따른 음성안내기 및 경고 표지는 버스정류소, 학교 주변, 공원 등 실외 흡연구역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외 흡연구역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¹⁾, 실외 흡연구역의 음성안내기 부착 여부 및 개수 등은 설치 구역의 특징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음성안내기 설치 단가의 경우에도 다양한 음성안내기 설비²⁾가 존재하므로 설치 구역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nabo.go.kr

- 1)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법정 금연구역은 167만 4,871개이며 이는 실내와 실외 금연구역을 포함함. 다만, 각 지자체가 조례로 추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경우 실외 금연구역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전국 19만 7,303개소가 있음
- 2) 예시로 금연구역 음성안내기를 설치한 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등포구는 태양열을 이용하여 자체 전기를 발생하는 음성 안내기, 일산서구는 버튼을 누르면 안내 방송이 송출되는 금연벨, 안산 단원구는 안내방송이 송출되는 스마트 무선 스피커 등으로 제품별로 기능과 운영 방식, 가격 등이 상이함